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532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

담당변호사 박정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5. 14. 접수 제1646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21. 2. 9.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9년 귀속 주민세 합계 10,828,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9. 5. 14. 접수 제16462호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B는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받았을 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인 B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

1. 서산시 D 대 808㎡ 중 1/5 지분
2. 서산시 E 전 468㎡ 중 1/5 지분. 끝.

